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정비시설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3. 07



목 차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1.1 추진개요	2
1.2 계획의 개요	6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8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9
제3장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4
3.1 대상지역의 설정	15
3.2 평가항목의 설정	17
3.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20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28
4.1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9
4.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29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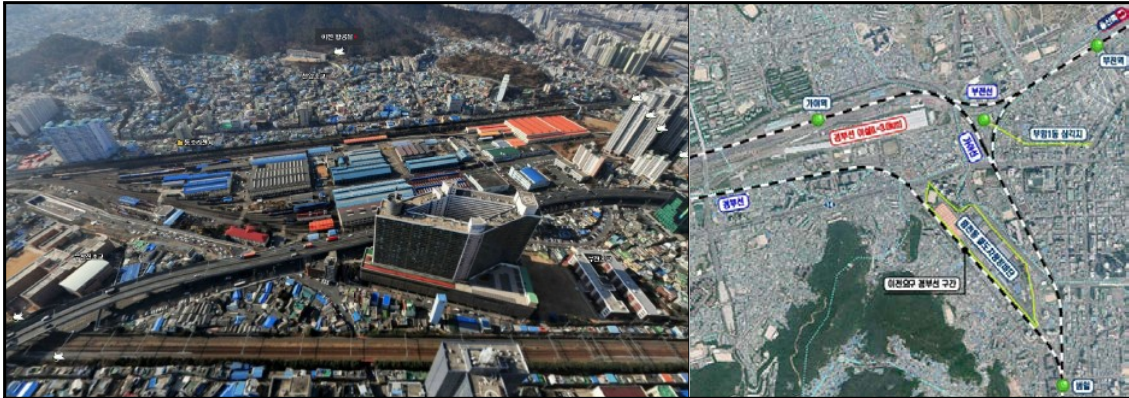
1.1 추진개요

1.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은 부산항과 함께 부산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으나, 도심지 내 대규모 철도시설은 도시의 확장 및 교통수단과 생활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도시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미관과 소음, 분진 등으로 생활여건 악화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철도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 이로 인해 기 시행된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방안(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2017, 부산광역시)에 따라 철도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임.
- 본 사업은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방안에 따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철도차량정비단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부산신항역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과, 차량정비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현대화로 개량하여 철도 경영환경에 기여 하고자 함.



자료 :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기본계획 보고서(부산광역시, 2017.12)



범천동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전경 [현 기존 철도차량정비단 전경]

-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으로 도심 재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 기여
 - 철도시설로 인해 단절된 도시 기능 회복
 - 주거 및 상업 공간 확보로 도시 경쟁력 향상
 - 낙후된 원도심 정비로 도시 개발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기존 도심 주민 민원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 철도차량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지속적 민원에 대응
 - 도심지역 기지의 디젤기관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소
 - 기존 도심의 합리적 토지이용으로 도시 환경 보전
- 철도시설의 재배치를 통한 철도 경쟁력 강화
 - 효율적인 철도차량기지 재배치를 통한 운영 비용절감 및 수송력 향상
 - 미래 철도차량 운용에 대비한 철도시설의 혁신

1.1.2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표 1.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사. 철도의 건설	3)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u>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u>	「철도건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추후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 3]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1.2-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7. 철도의 건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표 1.1.2-3>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비고
제24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1.1.2-4> 환경영향평가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비고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1.1.3 계획의 추진경위

- 2012. 06. : 부산 도심 철도시설 이전 및 대상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 2014. 12. :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발전 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 2017. 12. :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부산광역시)
- 2019. 02. :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기본계획(국토교통부)
- 2019. 04. : 미래 철도차량기지 운영 방안 기초 연구 용역(국토교통부)
- 2019. 07. : 2019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 통보
- 2020. 06. :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이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 2021. 09. :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정비시설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22.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3. 06 ~ 0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심의
- 2023.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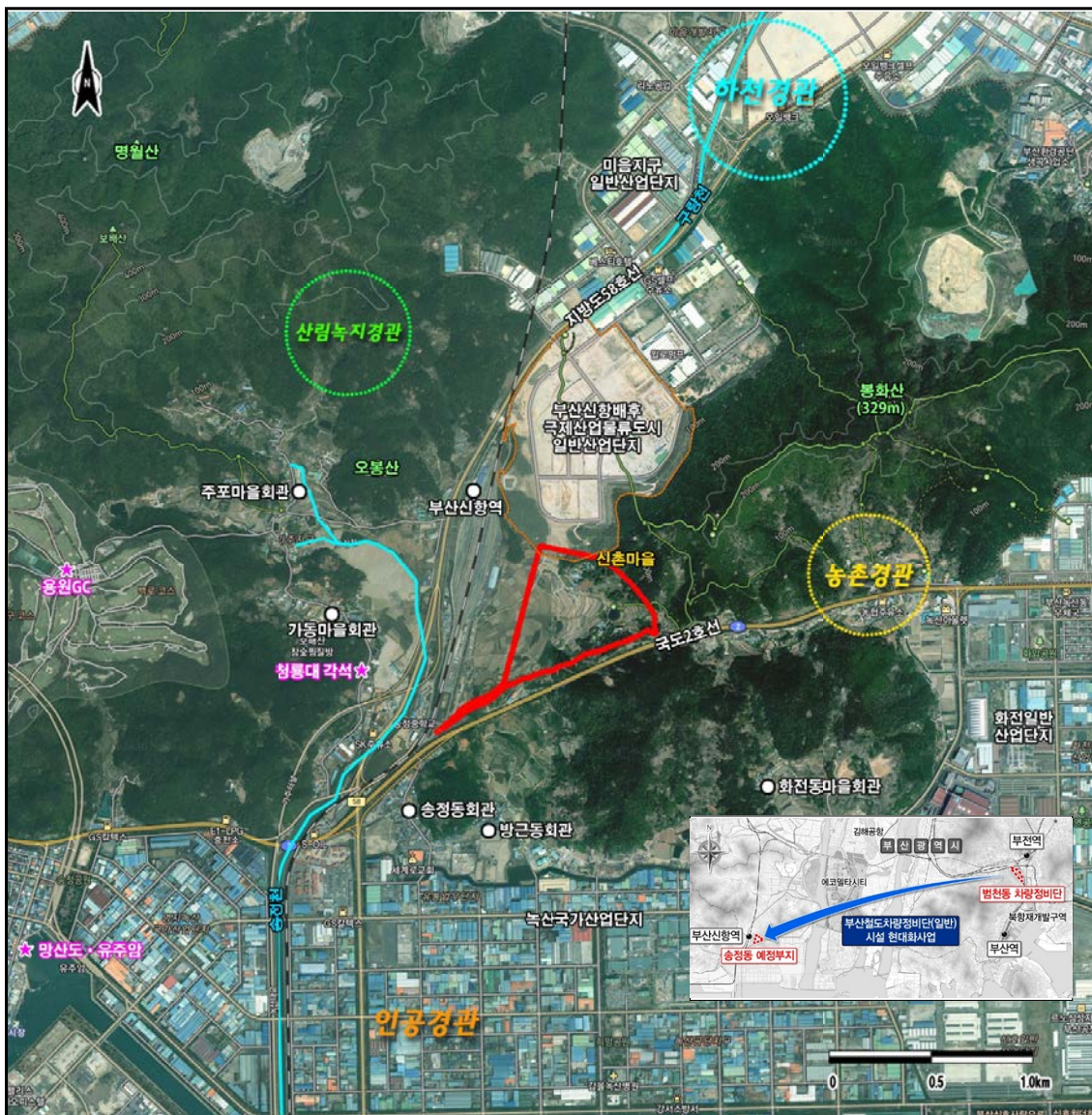
1.1.4 향후 추진 계획

- 2023.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2023. 08 ~ 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3.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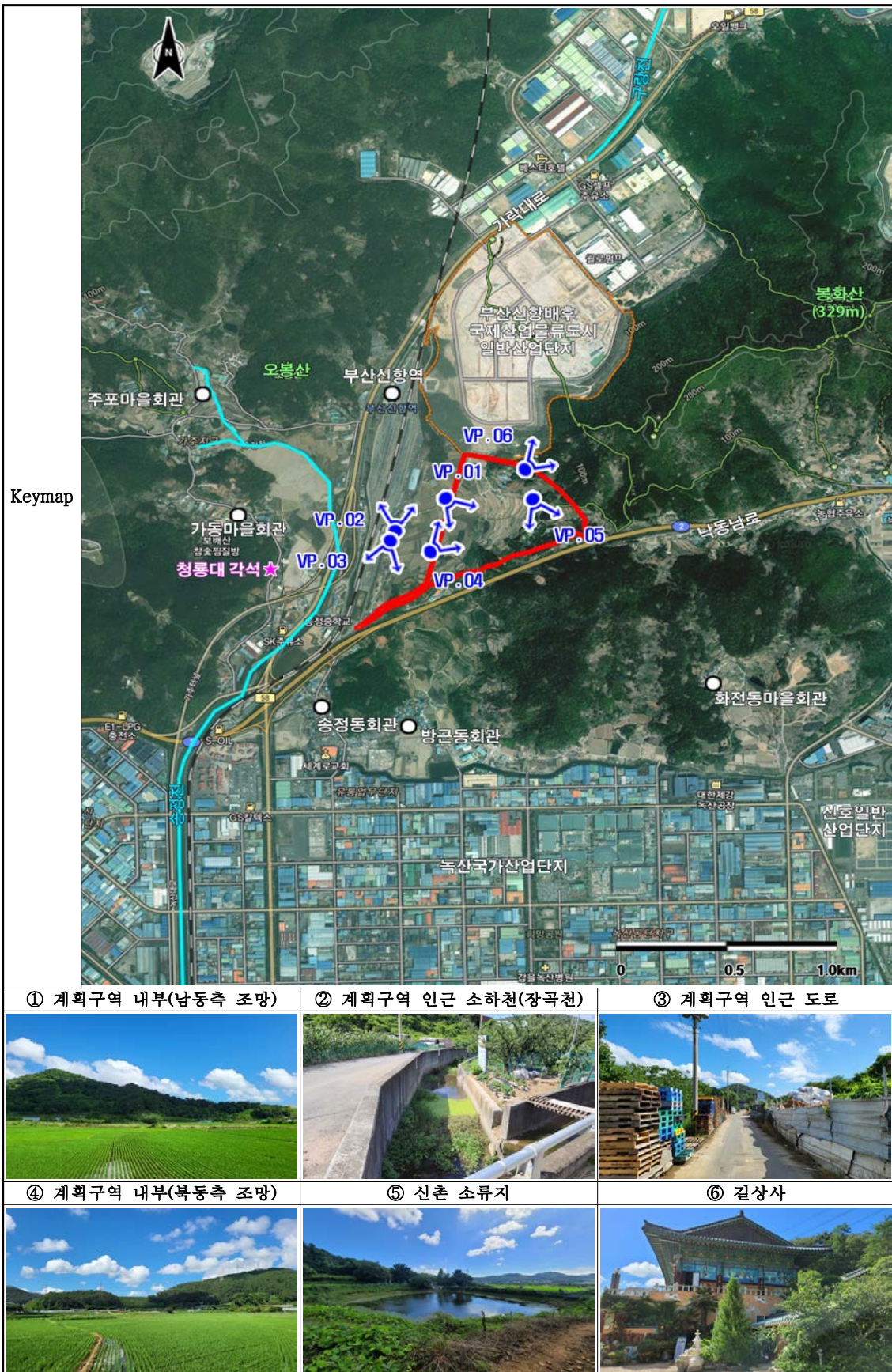
※ 상기 향후 추진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사항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2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정비시설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501 일원 (부산신항역 인근)
- 면 적 : 295,500㎡
- 계획시행자 : 한국철도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사업기간 : 기준년도 2023년, 목표년도 차량정비시설 완료 후 40년
- 사업기대 효과 :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한 철도 경쟁력 강화, 기존 도심 주민 민원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재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 기여 등



<그림 1.2-1> 위치도



<그림 1.2-2> 조망점 위치도 및 현황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주관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심의위원 : 총 10명(승인기관, 협의기관, 민간전문가(시민단체 포함), 주민대표 등)

<표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순번	구분		소속	비고
1	승인기관	위원장	국토교통부	-
2	승인기관	위원	국토교통부	-
3	협의기관	위원	환경부	-
4	관할 지방환경청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	-
5	민간전문가	위원	동의대학교	위원장 추천
6	민간전문가	위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추천
7	민간전문가	위원	(사)초록생활	시민단체 추천
8	관할 지자체	위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
9	주민대표	위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철도이전대책위원회
10	주민대표	위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통장단

- 심의기간 : 2023년 06월 02일 ~ 2023년 06월 16일

(최종 의견 회신일 : 2023년 07월 05일)

- 결정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방법,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등
- 결정결과 :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8명 심의의견(서면) 제출



국토교통부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정비시설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심의 요청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정비시설 이전사업'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23.6.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부(별도송부).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환경부장관(환경영향평가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한국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감서구청장(환경위생과장), 각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사무관대우

협조자

시행 철도건설과-2199 (2023. 6. 2.)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57 팩스번호 044-201-5595 / sishin@molit.go.kr / 비공개(5,6)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1 - 1

<그림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심의 요청공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정비시설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평가 시 상·하위 및 관련계획(환경보전계획 포함)과의 연계성·부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상세히 비교 분석하고, 구체적인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시행령 별표 제1호 나목)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240호, '22.12.1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기존 운영되는 유사시설(철도차량 정비시설)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바탕으로 대기질, 소음·진동 등 환경문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기질,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범위는 사업구간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 3.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부지의 특성, 지형, 식생, 생태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개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계획 수립 4. 대안 ○ 평가서 초안에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 이행할 대안에 대한 선정 사유를 명시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대기질, 수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등을 계절, 시간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사시기, 지점, 항목 및 횟수 등 선정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인근지역의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조치하여야 함 7. 기 타 : 의견없음 2023. 6. .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정비시설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사업지구에 대해 환경적 관점에서 입지 타당성 보완이 필요함 ○ 주변 지역이 현재 개발 중이거나 철도,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본 사업지구내 생태계 밀도가 높을 수 있음. 따라서 경밀한 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 ○ 건물 배치 대안뿐만 아니라 타 입지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지구 주변이 기계발전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업지구는 대부분 농경지이며 생태자원이 2등급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음. 주변 개발로 인해 생태계 밀도가 본 사업지구내 집중되었을 우려가 있으므로 경밀한 동·식물 조사를 통해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기존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계획에 비해 이전 대상지를 본 사업지구로 설정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특히 본 입지에 대해 환경적 관점에서 설명이 전무하여 본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함 2023. 6. 12.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정비시설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목표설정에는 적절히 절되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철새 도래지 및 주변 생태, 대기질 등을 고려 할 때 충분한 검토 요망 3. 토지이용 구상안 ○ 4. 대안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및 검토 그리고, 공사 시 흙수 등의 영향도 추후 검토요망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3. 6. . 20 .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정비시설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운영중인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일반)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대체기지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이 없도록 환경기준, 환경보호 대상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목별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과학적인 예측·분석된 자료에 따라, 분야별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제시하여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추후 사면발생이 최소화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 환경 법령을 준수할수 있는 구상안 마련 4. 대안 ○ 철도기능의 계원이 수반되는 계획비교의 대안2(Action)이 적정하며, 계획시행 시 환경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정안을 도출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구역에 관입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공사 시 대기질 및 소음 등 피해발생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 ○ 차량정비 시 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수계오염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 ○ 정비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한 소음, 대기오염, 경관지해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 마련 ○ 지하수, 토양, 하천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주민 의견수렴 필요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예측하지 못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피해 사전 예방 필요(민원발생 시 적극 대응) 2023. 6. 16. 심의위원

<그림 2.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총 관 의 건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함 3. 대안 ○ 적정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표 7.1.1 - 1>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요소 및 영향 공사시(환경영향) - 생태공간 파괴 누락 운영시(환경영향)-원차운영-다중(경유)매연발생/자랑세척 폐수발생/폐유 및 폐기물발생 누락 (환경영향)-불투수성 연직증가-비점 오염저지시설 설치 필요 누락 <표 7.2.2-1>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토,식물상(육상)-육상 1회 조사로 평가 가능한가/ 계절별 토,식물상 특성에 따른 조사횟수 증대 필요 대기질 및 수 환경 - 1회 현황조사로 평가의 무결성유지 / 계절별 조사횟수 증대 해야 토지환경-토양1회 조사 어떠한 항목을 조사평가했나 생물환경-소유권종류 포함 1회로 평가 어려움(시간별 주간/야간별 조사 누락)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타 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소유권종류는 철도시설이 유치됨으로 철도소유 / 전통으로 조사 되어야함. 철도시설 설치 이전후 사후영향평가기간3년- 명시안됨. 바다와 근접한 오염물질 유출 대책 없음. 육지 1km 바다쪽 10km 해안이 안되는가? 전환경적 토지이용은 토지절개/평탄화 하거나 최소화 해야하는데 내용이 없다. 주변에 소류지 에 생태환경조가 결과 비동함. 2023. 06. 16.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정비시설 이전사업 전라환경영향평가) □ 총 관 의 건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표 7.1.1 - 1>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요소 및 영향 공사시(환경영향) - 생태공간 파괴 누락 운영시(환경영향)-원차운영-다중(경유)매연발생/자랑세척 폐수발생/폐유 및 폐기물발생 누락 (환경영향)-불투수성 연직증가-비점 오염저지시설 설치 필요 누락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되도록이면 시정하고 만약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2.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적정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현재는 최상위 리스 공사를 시행 하려 함 4. 대안 ○ 환경영향조사, 미세먼지 발생량, 인공광공정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주민에게,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7. 기타 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3. 6.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정비시설 이전사업 전라환경영향평가) □ 총 관 의 건 ※ 범위의 결정은 적함, 부산전 cy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지역과 중복지역으로 생태계,환경 동일 . 송정동 500번지 일원에 습지 겹 침사지를 설치하면 주변 생태통로를 통한 생태계 연결과 사업지 주변 생물 보전, 여름 유람, 오탁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개발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태계 보존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펜스는 사업지 끝으로 이동설치 (현 물류지 펜스이동 조치) 하여 생태통로 정상화. 2.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은 적정하며, 부산전 cy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지역과 대상 지역은 동일현지역 이므로 참고하여 해당기간으로 진행 가 해 보여줍니다. 3. 토지이용 구상안 ※ 다중기관과 통합으로 준비되는 295,500m2 이용안이 여러면에서 합당하다고 사료됨. 4. 대안 ※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 부지내 주민들과 경작작물, 동식물은 부산전cy 공사시 비산먼지, 작업차량의 대기오염물질발생, 작업 소음발생, 강우로 인한 오탁수나 비점오염 물질 발생등 으로 직접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선 이주 조치, 수몰보상 후 공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7. 기타 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계획과 입지 부합성은 심수년의 논의로 위 사업지가 적함. 2023. 6. 19. 심의위원

<그림 2.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2/3)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 정비시설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사업 개요 > ○ 위치 : 부산진구 범천동 → 강서구 송정동 501번지 일원(부산신항 인근) ○ 사업기간 : 2023년 ~ 2028년 ○ 사업규모 : A = 295,000㎡ - 열차 전·출입로 57,262㎡, 도로 및 주차장 44,738㎡ - 열차관리시설(공장, 창고 등) 85,988㎡, 시설관리시설(종합관리동, 정비실 등) 3,094㎡ - 조경녹지 56,724㎡, 사면녹지 47,694㎡ ○ 계획시행자 : 한국철도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2] 사. 철도의 건설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기 시행된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방안*에 따라 현재 부산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철도차량정비단(일반)을 강서구 송정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일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2017, 부산광역시)」, 「21.5.21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사유 및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할 기법, 내용 등의 선정사유와 그 타당성을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사업개요, 관리계획(안), 변경사유,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현황사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자료 포함) 등을 제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계획지구의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계획지구와 주요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과의 연관성 여부 등 검토자료 3. 대안 ○ 3개 이상의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가. 공통 ○ 각 항목별 조사(문헌, 현지, 탐문 등)시기 및 지점, 항목 및 횟수 등은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함. ○ 기존 지점·통계·조사자료 등 문헌 조사 시 5년 이내 가장 최근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조사지점(도면) 및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나. 항목별 심의의견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조사 시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계획지역 및 인접지역의 법정보호종 출현 및 서식지 분포 여부 조사·제시하고 보전방안 등 저감방안 마련 -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생태자연도 및 식생현황을 조사·제시하고 구체적인 영향 저감방안 제시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지상부를 통과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주요 조망점(근경, 중경, 원경)을 선정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을 경관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예측·검토
○ 수환경의 보전 - 사업시행 시 비점오염물질,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지하수, 낙동강하구, 해당 등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환경기준 부합성 -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진동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 정온시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당작업 등 각 공정별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영향권을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강구,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 시 등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과 공회회 개최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현수막 등)를 활용한 의견수렴 계획 검토하여야 함. 6. 기타 ○ 동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계획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미반영 시 그 사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240호, 2022.12.1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023. 7. . 심의위원

<그림 2.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3/3)

제3장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제3장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1 대상지역 설정

- 계획구역은 조사 및 평가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3.1-1>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범위
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 연계를 평가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에 대한 분석으로 적정성 평가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육상동 · 식물상	○문헌자료(전국자연환경조사 등) 현지조사를 토대로 평가	식물상·식생, 동식물상 계획구역 반경 500m 이내
		지형 및 생태축 보전		○문헌자료(지형관련 문화재, 기본계획 등) 및 현지조사를 토대로 평가 실시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자연경관		○문헌자료(자연경관심의 대상, 기본계획 등) 및 현지사진을 토대로 평가 실시	
		수환경보전	수질 (수리·수문)	○문헌자료(하수도시설기준, 기본계획 등) 및 현지조사를 토대로 평가 실시	계획구역 인근 영향예상 수계
	2.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계획구역 인근 기상대의 10년간 기상자료를 정리	계획구역 주변 기상대
			대기질	○문헌자료(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기본계획 등) 및 현지조사를 토대로 평가 실시	계획구역 반경 500m 이내
			토양	○문헌자료(기본계획 등) 및 현지조사를 토대로 평가 실시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문헌자료(건설기계류 소음특성, 기본계획 등) 및 현지조사를 토대로 평가 실시	계획구역 반경 300m 이내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온실가스	○문헌자료(온실가스항목 평가지침 등) 및 현지조사를 토대로 평가 실시	계획구역 반경 500m 이내
			친환경적 자원순환	○문헌자료(폐기물 통계자료, 기본계획 등) 및 현지조사를 토대로 평가 실시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3. 사회·경제환경 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문헌자료(통계자료, 기본계획 등) 및 현지조사를 토대로 평가 실시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산업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경계 300m)	소음 · 진동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경계 500m)	동 · 식물상(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온실가스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경관, 수질(수리 · 수문), 기상, 토양, 친환경적자원순환, 토지이용, 산업

<그림 3.1-1> 대상지역 설정도

3.2 평가항목의 설정

3.2.1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은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023-72호」 제23조제2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고려하여 설정함.

<표 3.2-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설정

평가항목				평가항목의 설정				비고
				중점 평가	현황 조사	제외 항목	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 본 계획과의 연계가 적정한지 검토 필요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분석을 위해 계획비교, 입지조정 등의 대안설정 및 분석 통한 적정성 검토	-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			○보호지역,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등 조사 필요 ○계획시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서식지 훼손에 대한 검토 필요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지형 및 생태 축 보전	지형·지질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 훼손에 대한 검토 필요 ○학술적·문학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 필요	지형지질
		자연 경관	경관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대한 검토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경관
		수환경 보전	수질 (수리·수문)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환경보전해역 등)에 직·간접으로 영향이 있는지 검토 필요	수질 (지표수질 지하수질)
			해양환경			○	○계획 수립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므로 제외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구역 영향범위 내 대기(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조사 및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 검토 필요	일반평가
			대기질	○				대기질
			온실가스		○			일반평가
			토양		○			일반평가
			소음·진동	○			○계획 수립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므로 제외	소음·진동
			전파장해			○		-
			일조장해			○		
			익취			○		
			위생·공중보 건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공급 가능성, 연계처리 등 적정여부	일반평가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구역 영향범위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 및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 검토 필요	일반평가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편입용지 및 토지이용의 환경적 적절성 검토 필요	일반평가
		인구, 주거, 위락				○	○계획 수립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므로 제외	-
		산업			○		○계획구역 영향범위 내 산업시설 현황 조사 및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 검토 필요	일반평가

3.2.2 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구역에 따른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 2023-72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지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함.
- 본 계획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7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고,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6개 항목을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9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표 3.2-2> 평가항목 설정(총괄)

구분	중점평가항목	일반평가항목	제외항목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육상), 자연환경자산	-	동·식물상(해양)
대기환경	대기질	기상, 온실가스	악취
수환경	수질(수리·수문)	-	해양환경
토지환경	지형·지질	토지이용, 토양	-
생활환경	소음·진동, 경관	친환경적 자원순환	위락,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	-	산업	인구, 주거
합계	7개 항목	6개 항목	9개 항목

<표 3.2-3> 평가항목의 설정(제외) 사유

구분	평가항목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중점평가항목 (7개)	동·식물상 (육상)	공사시 운영시	○공사시 및 운영시 생태계 훼손여부 파악 및 법 정보호종 서식지 훼손여부 검토
	자연환경 자산	공사시	○계획구역 주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특성 분포 현황 파악
	대기질	공사시	○시설물 설치 공사를 위한 토공사(부지터파기 및 되메우기) 및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 질 발생
		운영시	○시설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수질 (수리·수문)	공사시	○공사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오수 발생
		운영시	○근무인력 등에 따른 오수 및 시설운영에 따른 폐수발생 여부
	지형·지질	공사시	○차량기지 부지조성에 따른 지형변화 검토
	소음·진동	공사시	○시설물 공사를 위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 음·진동 발생
		운영시	○시설운영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일반평가 (6개)	경관	운영시	○부지조성 및 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 변화 발생
	기상	-	○대기질 모델링 기초자료 활용
	온실가스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운영시	○시설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토지이용	운영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여부
	토양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공사투입 인력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운영시	○근무인력 등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제외항목 (9개)	산업	운영시	○시설운영에 따른 산업 활성화
	동·식물상(해양)		○해당없음
	악취		○해당없음
	해양환경		○해당없음
	위락		○해당없음
	위생·공중보건		○해당없음
	전파장해		○해당없음
	일조장해		○해당없음
	인구		○해당없음
	주거		○해당없음

3.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3.3.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1) 계획의 적정성 분야

<표 3.3-1> 계획의 적정성 분야

설정된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사유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방법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과 의 연계성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 4, 제2호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 항목	계획의 시행기간	국가 DB, 문헌조사	○해당계획에 반영 되거나 연동된 관 련내용 파악
대안설정·분 석의 적정성		대안별 평가지표	계획의 시행기간	국가 DB, 문헌조사	○해당계획의 대안 설정 및 분석의 적정성 파악

(2) 입지의 타당성 분야

<표 3.3-2> 입지의 타당성 분야

설정된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사유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방법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식물상·식생, 동식물상 : 계획구역 반경 500m 이내	작성규정 별표 4, 제2호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 항목	최근 10년 이내	현지조사 문헌조사	○계획구역, 주변지 역의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조사
		육상 동·식물상	육상 동· 식물상 : 1회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 4, 제2호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 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계획구역, 주변지 역의 지형 및 생 태축 현황 파악
			-	현지조사	
자연경관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 4, 제2호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 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계획구역 및 주 변지역의 자연경 관 현황 파악
			-	현지조사	

<표 계속>

설정된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사유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방법	
수환경보전	계획구역 인근 영향예상 수계	작성규정 별표 4, 제2호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 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 계획구역 및 주 변지역의 수환경 보전 현황
		지표수질 환경기준 항목	수질(지표수질, 지하수질): 1회	현지조사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구역 주변 기상대 대기질: 계획구역 반경 500m 이내 소음·진동: 계획구역 반경 300m 이내 토양 :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 4, 제2호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 항목	최근 10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 계획구역 및 주 변지역의 대기, 소음·진동, 토양 등 환경질 현황 파악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등 환경기준 항목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1회	현지조사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 4, 제2호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 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 계획구역 및 주 변지역의 자원에 너지 순환 현황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 4, 제2호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 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 계획구역 및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 환경과 조화된 토 지이용 계획 파악
산업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 4, 제2호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 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 계획구역 영향범 위 내 산업시설 현황 파악

(3) 환경질 조사계획

- 본 계획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질,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동·식물상 조사를 계획함.

<표 3.3-3> 환경질 조사계획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대기질	○PM-10, PM-2.5, NO ₂ , SO ₂ , Pb, 벤젠, CO, O ₃ 8개 항목	3지점 (3일 조사)	1회
지표수질	○pH, BOD, COD, SS, DO, T-P, 총대장균군, TOC, 분원성 대장균군 등 9개 항목	3지점	1회
지하수질	○pH, Hg, NO ₃ -N, Cr, 다이아지논, CN, 트리클로로에틸렌, 파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Cd,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b, 톨루엔, 에틸벤젠, 비소, 크실렌, 페놀, Cl ⁻ , 총대장균군 등 20개 항목	3지점	1회
토양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s,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1,2-디클로로에탄, 벤조(a)피렌 등 20개 항목	3지점	1회
소음·진동	○소음도, 진동도	4지점	1회
동·식물상	○육상식물 : 식물상 및 식생 ○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육수동물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1회

- 주) 1. 대기질, 소음·진동 현황조사는 계획구역 주변 정온시설 위주로 진행
 2. 소음·진동 현황조사는 조사 1회당 소음은 주간4회, 야간2회를 실시하고 진동은 주간2회, 야간 1회 실시
 3. 문헌자료로 인근 개발사업의 계절별 조사자료(최근 5년 이내)를 추가적으로 활용

나. 평가 방법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방법을 설정함.

<표 3.3-4> 평가방법 설정

설정된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평가지표)	평가방법 설정	설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개발방향과 부합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6 ~ '20), 제5차 국토종합계획('20 ~ '4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 ~ '25), 2030년 부산 도시 기본계획('13 ~ '30)	지표분석, 문헌자료 분석 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여부 등과 관련 지표 분석 ○ 대안설정 분석시 대안별 요소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 설정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적절한 대안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입지의 타당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식생보전 2등급지 이상 보전 ○ 생태·자연도 1등급지 이상 보전 ○ 현지조사시 발견된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이주대책 수립	지표분석, 문헌자료, 사례분석 등	○ 계획구역 지형 및 경관 변화 분석 등 공간적 범위나 영향 정도를 시각적으로 분석 ○ 생태자연도 등 지표분석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특이지형,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및 생태축의 보호		
자연경관	○ 주변 경관과의 자연스러운 조화 도모		
수환경보전	○ 수질(하천, 지하수) 환경기준 유지 및 권역별 목표기준 달성		
환경기준 부합성	○ 국가 대기환경기준 유지 및 탄소중립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협력 ○ 환경기준의 유지(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모델링 수치해석, 예측식 등	○ 모델링 및 예측식을 통한 환경기준 만족여부 등 분석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의 재이용	지표분석	○ 자원순환 이용률 등 지표분석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고려한 완충공간 설정	지표분석	○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편입토지 이용변화 예측·평가

3.3.2 환경영향평가

가.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현황조사와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지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토록 할 계획임.
- 한편, 환경영향평가지 현황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지 미 조사된 계절 중에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표 3.3-5>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설정된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사유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방법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육상)	식물상·식생, 동식물상 : 계획구역 반경 500m 이내	작성규정 별표6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10년 이내	현지조사 문헌조사	○계획구역, 주변지 역의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조사
		육상 동·식물상	육상 : 2회		
자연환경자산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6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5년 이내	현지조사 문헌조사	○계획구역, 주변 지역의 보전 가 치가 있는 지역 특성 분포현황 조사
			-	현지조사	
대기환경					
기상	계획구역 주변 기상대	작성규정 별표6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10년 이내	기상대 관측자료	○계획구역 주변 기상대의 관측결 과 조사
대기질	계획구역 반경 500m 이내	작성규정 별표6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계획구역 및 주 변지역의 대기질 현황 조사
			대기질 : 2회	현지조사	
온실가스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6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계획구역 및 주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원 등 조사
			-	현지조사	
수환경					
수질 (수리·수문)	계획구역 인근 영향예상 수계	작성규정 별표6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계획구역 및 주 변지역의 수질, 수리·수문인자 등 조사
			지표수질, 지하수질 : 2회	현지조사	
토지환경					
토지이용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6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계획구역 및 주 변지역의 사회· 경제환경과 조화 된 토지이용 계 획 파악
			-	현지조사	
토양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6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계획구역 및 주 변지역의 토양오 염도 현황 조사
			토양 : 2회	현지조사	
지형지질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6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계획구역 및 주 변지역의 지형, 특이지형 등 파악
			-	현지조사	

<표 계속>

설정된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사유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방법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6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계획구역 및 주 변지역의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 조사
			-	현지조사	
소음·진동	계획구역 반경 300m 이내	작성규정 별표6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계획구역 및 주 변지역의 소음· 진동도 조사
			소음·진동 : 2회	현지조사	
경관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6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계획구역 및 주 변지역의 경관자 원 등 조사
			-	현지조사	
사회·경제환경					
산업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작성규정 별표6에 따른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5년 이내	국가 DB 문헌자료 조사	○계획구역 및 주 변지역의 산업시 설 현황 파악
			-	현지조사	

<표 3.3-6> 환경질 조사계획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대기질	○PM-10, PM-2.5, NO ₂ , SO ₂ , Pb, 벤젠, CO, O ₃ 8개 항목	3지점 (3일 조사)	2회
지표수질	○pH, BOD, COD, SS, DO, T-P, 총대장균군, TOC, 분원성 대장균군 등 9개 항목	3지점	2회
지하수질	○pH, Hg, NO ₃ -N, Cr, 다이아지논, CN, 트리클로로에틸렌, 파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Cd,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b, 톨루엔, 에틸벤젠, 비소, 크실렌, 페놀, Cl ⁻ , 총대장균군 등 20개 항목	3지점	2회
토양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s,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1,2-디클로로에탄, 벤조(a)피렌 등 20개 항목	3지점	2회
소음·진동	○소음도, 진동도	4지점	2회
동·식물상	○육상식물 : 식물상 및 식생 ○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육수동물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2회

- 주) 1. 대기질, 소음·진동 현황조사는 계획구역 주변 정온시설 위주로 진행
 2. 소음·진동 현황조사는 조사 1회당 소음은 주간 4회, 야간 2회를 실시하고 진동은 주간 2회, 야간 1회 실시

나. 평가범위 및 방법

- 환경영향평가범위는 계획구역으로 인한 영향예상지역인 현황조사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평가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023-72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표 3.3-7>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구분		평가범위	평가방법
자연 생태 환경	동· 식물상 (육상)	식물상·식생, 동식물상 : 계획구역 반경 500m 이내	○ 자료 및 현지조사(육상 동·식물상) - 주요종(법정보호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예측 - 육상동물 및 육수동물의 서식처 훼손 및 간섭 예측 - 식물상 및 식생변화 - 훼손수목발생 및 예측
	자연 환경 자산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 자료 및 현지조사 - 보전이 필요한 자연환경자산의 분포를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
대기 환경	기상	계획구역 주변 기상대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계획구역 반경 500m 이내	○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공사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 및 확산 예측 ○ 운영시 시설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발생 및 확산예측 ○ 지형조건, 주풍향 등 지역특성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영향예상지역을 선정하고 현황 농도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여농도 가산
	온실 가스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등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 운영시 시설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변화량 예측
수환경	수질 (수리·수문)	계획구역 인근 영향예상 수계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에 의한 영향 - 합리식을 통한 토사유출량 산정 및 저감 대책 수립 ○ 운영시 근무인원 등에 따른 오수발생,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비점오염원 발생, 정비 및 세척 등에 따른 폐수발생 예측

<표 계속>

구분		평가범위	평가방법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파악 ○ 토지이용 계획 및 구조물 배치 등에 의한 친환경적 토지이용 여부 파악
	토양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 예측
	지형지질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 사면발생여부 및 사면안정성 등 평가 ○ 토공사 계획 파악 ○ 지형변화 여부 및 최소화 검토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 유사사례 및 폐기물 통계자료의 원단위를 활용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 ○ 운영시 시설운영에 의한 폐기물 및 폐유발생 및 처리대책 검토
	소음·진동	계획구역 반경 300m 이내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등에 따른 소음·진동 예측 ○ 운영시 시설운영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 - 정비시설 운영 및 인입 열차로 인한 소음·진동 예측
	경관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 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
사회·경제환경	산업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 산업 관련 기존 통계자료 분석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4.1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4.1.1 결정내용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공개 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항목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공개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4.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4.2.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공고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 신문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공람·공고 게시
 -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공람장소 :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1개소 이상
- 공람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산입 제외)

나.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 설명회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설명회 개최 시기 : 공람기간 내
- 설명회 개최 공고 및 홍보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 전까지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관계 행정기관 정보통신망의 공람·공고 게시 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포함하여 공고
 -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해 주변지역 현수막 게시 등 활용

(2) 공청회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공청회 개최
 - 공청회 또한 주민들로부터 별도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시행
- 개최 공고 :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 결과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은 공청회가 끝난후 7일 이내에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3) 주민의견 제출 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 의견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일 ~ 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 제출의견 :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다. 설명회 및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4.2.2 환경영향평가

- 향후 환경영향평가가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

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 공고내용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 신문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공람·공고 게시
 - 사업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공람장소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1개소 이상
- 공람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산입 제외)

나.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 설명회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설명회 개최 시기 : 공람기간 내
- 설명회 개최 공고 및 홍보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 전까지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사업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의 공람·공고 게시 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포함하여 공고
 -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해 주변지역 현수막 게시 등 활용

(2) 공청회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 공청회 개최
 - 공청회 또한 주민들로부터 별도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시행
- 개최 공고 :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 결과 : 공청회가 끝난후 7일 이내에 개최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3) 주민의견 제출 방법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의견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일 ~ 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 제출의견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다. 설명회 및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